

불입-위임장(개장·이장 신고 및 증명서 발급, 화장, 봉안, 봉헌증서 승계, 수령 등 일체 권한)

위 입 장

[illegible]

※ 첨부서류

1. 위임하는 사람 : 인감증명서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사본, 제적등본
2. 위임받은 사람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제시

*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(사용인감 기능)을 날인하여야 합니다.

※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「형법」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·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(뒷면계속)

(예시)

위임인 신분증 복사

위임자 성명 및 서명 사인 : _____